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3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 : 윤건영 • 박지원 • 이성윤

이기헌 · 신정훈 · 조계원

김영배 · 한병도 · 채현일

모경종 • 김영진 • 강훈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·소방청·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 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, 재난·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 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, 재난·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9호까지에"를 "제10호까지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0호까지에"를 "제11호까지에"로 한다.

10.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, 재난·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	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
• 제공 제한) ① (생 략)	•제공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	②
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	
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	
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	
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	
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	
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	
다. 다만, 제5호부터 <u>제9호까지</u>	<u>제10호까지</u>
<u>에</u>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	<u>에</u>
우로 한정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</u> .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,
	재난・재해의 예방과 대응을
	위하여 필요한 경우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	4
제6호까지, 제8호부터 <u>제10호까</u>	<u>제11호까</u>
<u>지에</u>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	지에
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	

3자에	게 제공	'하는 기	경우에	는 그
이용	또는 >	제공의	법적	근거,
목적	및 범위	의 등에	관하	여 필
요한	사항을	보호유	리원회 <i>></i>	가 고
시로	정하는	바에	따라	관보
또는	인터넷	홈페이	지 등	에 게
재하여	겨야 한 [[]	丰.		

⑤ (생략)

,
⑤ (현행과 같음)